

교육부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연 월 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개정(2025.12.31.)됨에 따라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변경

1) 현행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던 것을 변화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으로 현행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육부령 제 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제5조제1항 관련)

성 별	구 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μ g RAE)		티아민 (비타민B ₁) (mg)		리보플라빈 (비타민B ₂)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 (mg)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유 치 원 생			400	7.1	66	85	0.12	0.15	0.15	0.17	10.0	12.8	128	156	1.2	1.7		
남	초등	1~3학년	570	11.7	104	150	0.17	0.24	0.24	0.30	13.4	16.7	200	234	1.7	2.4		
	학생	4~6학년	670	16.7	137	200	0.24	0.30	0.30	0.37	18.4	23.4	234	267	2.0	2.7		
	중학생		840	20.0	180	250	0.30	0.37	0.40	0.50	23.4	30.0	267	317	2.7	3.7		
	고등학생		900	21.7	207	284	0.37	0.44	0.47	0.57	26.7	33.4	234	267	2.7	3.7		
여	초등	1~3학년	500	11.7	97	134	0.20	0.24	0.20	0.27	13.4	16.7	200	234	1.7	2.4		
	학생	4~6학년	600	15.0	130	184	0.27	0.30	0.27	0.34	18.4	23.4	234	267	2.0	2.7		
	중학생		670	18.4	160	217	0.30	0.37	0.34	0.40	23.4	30.0	234	284	2.7	4.4		
	고등학생		670	18.4	150	217	0.30	0.37	0.34	0.40	26.7	33.4	184	234	2.4	4.0		

비고: 유치원생의 경우 제공되는 간식을 제외하고 산출된 수치임.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pm 10\%$ 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0~65% : 10~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나.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